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4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6명(정순옥, 김정희, 도하석, 김장관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10. 24.)

## 2. 제안이유
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재정적 지원(안 제7조)
-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(안 제8조)
- 포상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11조, 제26조, 제44조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9. 3.~9. 15.): 의견없음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제정 조례안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 등의 책무,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, 교육 및 홍보, 재정적 지원,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사용,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원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인식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##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